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773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19년 6월 28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의 개정으로 3급 이상 실·국·본부 수가 확대됨에 따라 행정기구를 확대하여 시정 핵심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개정사항 반영

- (1) 시·도 자율신설기구 근거 신설에 따른 목적규정 개정(안 제1조)
- (2) 경제활성화 핵심사업 실행력 확보를 위해 ‘경제일자리기획관’을, 사람중심 서울형 복지 구현을 위해 ‘복지기획관’을 각각 보조기구로 신설 (안 제4조)
- (3) 시민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‘서울민주주의 위원회’ 신설(안 제128조부터 제13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(1)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
- (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 및 제9조의2

나. 예산조치: 협의완료

다. 기 타

- (1) 신·구조문 대비표: 별도 첨부
- (2) 입법예고('19. 6. 26.) 결과: 의견없음
- (3)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: 별도 첨부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9조”를 “제9조의2”로 한다.

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 2에 따라 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,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.

제5장제3절(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

제128조(설치) 법 제116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시장 소속하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.

제129조(위원장)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위원장(이하 “서울민주주의위원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

고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0조(소관사무)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시민민주주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
2. 시민참여·숙의 예산제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3. 민관협치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
4. 마을공동체 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
5. 서울민주주의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·폐지에 관한 사항
6.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예산요구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) 제4조의 경제일자리기획관, 복지
기획관, 제128조의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
7월 24일까지로 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부터 제114조 및 제116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6조부터 <u>제9조까지</u>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설치,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·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9조의2</u>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제4조(실·본부·국의 설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「<u>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</u>」 제9조의2에 따라 <u>경제정책실장 밑에 경제일자리기획관을, 복지정책실장 밑에 복지기획관을 둔다.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3절 서울민주주의위원회</u></p> <p><u>제128조(설치) 법 제116조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9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조례」 제7조에 따라 시장에 서울민주주의위원회를 설치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: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

3. 미첨부 사유

본 조례의 개정 내용은 행정기구 신설에 관한 것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추가 인건비가 발생하며, 「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」에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추계서는 미첨부함

4. 작성자 : 조직담당관 박 성 찬(☎ 2133-6724)